



제323회 임시회

2013. 9. 4.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광희 의원 외 6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3년 8월 23일

○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학생들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이 사회·경제·문화 등 인간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관련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9조)
- 라.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
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충북의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에 충청도내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시책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우리 도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학교환경교육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재인식하게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과 제10조에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의 체계성과 실효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 안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한 것은, 학교환경교육과 충청북도 내 모든 환경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촉진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충북의 환경보존과 발전, 충북 도민의 친환경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

고, 이에 따라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적 역할강화와 인식 확대,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환경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학교환경교육과 관련된 교수학습활동 자료와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학교환경교육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 됨.

관 계 법 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심의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호선된 민간위원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24>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